성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개정된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에 관하여 의견의 검토와 결과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의견제출 제외 대상, 의견제출 방법,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
(안 제4조 ~ 제6조)

나. 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반영(안 제7조 ~ 제8조)

다. 의견제출자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와 의견제출 처리에 종사한 자의 비밀 준수 의무(안 제9조 ~ 제10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20조, 별첨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 [미래전략담당관-3770(2021.11.15.)호]
○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지원과-47325(2021.11.11.)호]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1. 22. ~ 12. 12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의견제출 제외 대상, 의견제출 방법,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